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2.12.14)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광용]

목 차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3
5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8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제6호)
 -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 제4조제1항제3호
- 나.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 제2항 제1호)
 - 현행 : 월 3만원 ⇒ 변경 : 월 5만원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 (1) 자 ⇒ 사람
 - (2) ~한 때 ⇒ ~한 경우가.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제3항,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15백만원(2013년 추경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0.29. ~ 10.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리.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사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0조**에서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안 제11조, 안 제13조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 자 ⇒ 사람

○ ~ 한 때 ⇒ ~한 경우

○ 이 개정 조례안은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 ~ 18. (생략)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2. 제안이유

-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지급에 대한 환수절차 규정을 두어 화장장려금 지원 업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호)
 -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제2호
- 나.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정함(안 제6조제1항)
 - 사망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다. 환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 (1)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통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송 등 지속적으로 독촉
 - (2)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0.29. ~ 11.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업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확대)히 함.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망자 1구당 30만원 지원

- **안 제6조**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토록 명시.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로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보완함

-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를 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12.8.5] [법률 제11008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2. 제안이유

- 이장에게 지역 복지도우미로서 임무를 부여하여 증가하는 복지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이장의 기능을 행정 여건에 적합하게 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이장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 나. 실비변상 추가 지원(안 제4조)
 -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 지침」

나. 예산조치 : 64,080천원(2013년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9.28. ~ 10.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장에게 지역 복지도우미로서 임무를 부여하여 이장의 기능을 행정여건에 적합하게 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이장의 업무 중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월20,000원 지급)

○ 이 개정 조례안은 이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 업무를 부여하여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2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 지침」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에서 복지위원 및 통·리·반장 등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에게 안부확인 등 연계망이 활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 지원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2.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으로 미술 장식업무가 거창군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 공포(2011.11.26.)로 건축물 미술장식업무가 시·군 기초단위에서 시·도 광역단위 업무로 일원화
- 나.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2012.6.28.)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절차, 사후관리, 설치금액산정규정과 경상남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군단위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제6장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0.02 ~ 10.22)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으로 건축물 미술장식업무가 거창군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제6장에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

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

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제6장

제5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신설 2012.06.28>

제25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사용승인(사용검사)신청일 5개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 적용비율

② 제1항의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제6장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신설 2012.06.28>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제25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업무담당국장과 건축업무담당과장)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심의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민대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0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의 적절성 등

제31조(심의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기간 중에는 도내에서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회의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5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12.06.28>

제3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에게 위임한다.

1.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고지와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2. 제26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확인
3. 제27조에 따른 미술작품 사후관리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2.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군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관광 진흥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
- 나. 지원제외 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다. 관광안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제45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 2,000천원(2013년 당초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9.27. ~ 10.17) 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군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위탁대상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제정조례안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

- 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2.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2. 1

2.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충족을 위해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 및 조정함(안 제3조, 제16조, 제22조)

○ 주민생활지원실

- 사무이관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과

- 사무신설 :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 경제과

- 사무신설 :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 업무

○ 문화관광과

- 사무이관 :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문화센터(⇒ 문화센터)

- 사무이관 :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 사무이관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1.22. ~ 12.02) 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즈음하여 2010년 12월 조직 일제정비 후 일부 미흡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실·과의 설치)의 실장·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
 - 주민생활지원실장 분장사무 중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로 이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부터 인수하며

- 행정과장 분장 사무 중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 경제과장 분장 사무 중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문화관광과장 분장 사무 중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센터로 이관하고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센터로부터 인수하며
- **안 제2절**에서는 “교육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문화센터 소관사무 중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3절**에서는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거창사건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며
- **안 제4절**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안 제22조**에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사무 중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고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인수 함.
- 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22]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9.21, 타법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2.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2. 1

2.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6급 : 11% 이내(현행) → 12% 이내(조정 : 증 1%)
- 7급 : 25% 이내(현행) → 27% 이내(조정 : 증 2%)
- 8급 : 23% 이내(현행) → 18% 이내(조정 : 감 5%)
- 9급 : 41% 이상(현행) → 43% 이상(조정 : 증 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8명
 - 현행 : 523명(본청227명, 의회7명, 직속기관86명, 사업소34명, 읍33명, 면136명)
 - 조정 : 531명(본청239명, 의회8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0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 감5명

- 현행 : 57명(본청27명, 의회4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1명)

- 조정 : 52명(본청24명, 의회3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4명, 읍4명,
면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98,429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1.21. ~ 12.01) 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사무기능직의 경력경쟁 임용에 의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652명” 에서 “655명” 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 에서 “641명” 으로 조정함

- **안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조정 하였으며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이내⇒ 12% 이내	25%이내⇒ 27% 이내	23%이내⇒ 18% 이내	41%이상⇒ 43% 이상

-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를 652명 ⇒ 655명으로 3명 증원하고
 - 본청 정원을 272명 ⇒ 280명으로 8명 증원하며
 - 보건소 정원을 64명 ⇒ 63명으로 1명 감원 조정하고
 - 사업소 정원을 54명 ⇒ 50명으로 4명을 감원 조정함.
- 이 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채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록 하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2.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2. 1

2. 제안이유

-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나.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로운군민업무 담당부서장, 군의원,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

다.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부상의 정도에 따라 2백만원 ~ 7백만원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라. 위로금의 환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위로금을 수령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20,000천원(2013년 당초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0.18. ~ 11.07) 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이나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으로 하며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규정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의로운 군민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등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결정결과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과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군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등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

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 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사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사자를 말한다.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사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학력·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2.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상자 부상등급 및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구조행위에 대한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1억 9693만 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